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채우진 의원)

의안 번호	21-81
----------	-------

발의년월일: 2021. 8. .

발의자: 강명숙, 권영숙, 김영미, 이민석,
채우진

1. 제안이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되는 마포구 관광 홍보물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마포구 관광산업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개정(안 제7조)

3.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

4. 조 례 안: 붙임

5. 예산조치: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1. 8. 26. ~ 2021. 8.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관광 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제공)</u> <u>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u> <u>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u> <u>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u> <u>1.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u> <u>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u> <u>을 위한 방문 관계자</u> <u>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u> <u>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u> <u>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u> <u>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u> <u>여자</u> <u>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u> <u>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제7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u> <u>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u> <u>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u> <u>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u> <u>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u> <u>한다.</u>	<u>제7조(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u> <u>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u> <u>관광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와</u> <u>보존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u> <u>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재정</u> <u>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u> <u>수 있다.</u>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마포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 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관광과 김인영 (☎ 3153-8673)